

답) 부천시의 인력이나 기술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관련 도시과와 협의 인차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한 계획이다.

문) 현행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소형과 대형차를 구분하여 주차할 수 있는가? 또한 북개천변에 버스나 대형트럭 등이 세차나 정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치한 사항이 있는가?

답) 현행 주차시설은 소형과 대형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조치한 사항은 아직 없다.

문)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제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한 것인가? 아니면 내부부의 지침에 의한 것인가?

답) 주차장 확충을 하는데 쓰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부천시 자체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각시·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위원명	주요요지
강문식	우리 부천시의 경우 도로나 주차장 시설이 차량 대수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는바 현행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던 것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설치하여 예산전액을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난을 해소하는데에만 사용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줄 뿐아니라 세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함.
위원회 만장일치	강문식위원에 대한 만장일치로 찬성

나. 반대토론

위원명	주요요지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없음

나. 수정이유

없음

다. 수정주요일자

없음

6.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

7. 소수의 의견요지

부천시는 외형적으로 전국 8대 도시라는 거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형적으로는 시민의 휴식공간, 체육공원, 도시미관, 주차장시설등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낙후된 시로서 특히 교통을 소통할 수 있는 도로시설,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주·정차 위반에 대처할 수 있는 단속인력·장비 부족으로 인한 행정력 뒷받침이 미흡하여 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바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설치 지정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있게 예산을 집행 주차난 해소에 커다란 보탬이 되었으면 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부천시 자체의 지침을 마련 대책강구와 장비 및 인력확보 요망
- 부천시의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도움제공

9. 자구체계 심사내용

없음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1991. 7. 22.

지역개발특별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1년 7월 19일

부천시 제출

나. 회부일자: 1991년 7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1차 위원회(1991.7.20.) 상정

제2차 위원회(1991.7.22.)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가. 제안이유

국유철도 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휴 철도택지를 이용하여 역무시설 현대화와 상업시설 및 주차장 등을 건립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철도청장으로부터 신청이 있어 부천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음.

나. 주요일자

- 철도청이 1,842억원을 인차별로 투자하여 '94년도 개봉예정인 구로역에서 부천역까지 경인선 북북선화 사업으로 금년중에 현역사를 철거하여 서울방면 선로가 증설됨에 따라, 역사 현대화 시설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천역을 민간자본 일부를 유치하여 철도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있음.
- 부천도시계획 변경 사항인 자연녹지 지역 28,773 m²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시설녹지 10,140 m²를 해제하는데 있음.

3.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질 의	답 변
○민자역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은?	○도시계획법은 절차법이므로 공청회는 할 수도 없지만, 현행법으로도 불가능함.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은?	○98 년도의 교통영향평가로 5개노선, 8개 교차로에 대한 신호체계, 차량대수등을 감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하였으며, 753 대의 주차장 신설은 획기적임.
○민자역사 귀속시기와 교통유발 분담금을 환수할 것인지?	○관계규정상 30년 이하로 하게 되어있고, 30년 만에 한하여 인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약 50년~60년으로 보면 되며, 교통유발 분담금은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분담해야 되므로 법에 따라 시행할 것임.

4. 토론요지

(반대토론)

의원명	주 요 요 지
이문수	○지난 2 회 임시회때 부건요건을 보완하지 않았고, 교통영향평가지 남·북부역사거리 교통체계와 750대 주차시, 유동량을 보면 교통소통의 과학적 근거가 미흡함.

의원명	주 요 요 지
모인진	○교통 영향평가를 보완해 왔지만, 교통 영향평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적절 한 대책이 있을때 가능하다고 봄.
최용섭	○법에 규정이 없어도 반드시 공청회 형식이 아니라도 시민과의 대화가 없었음. ○부결에 대한 보완조치없이 상정한 것에 문제가 있고, 충분한 연구 검토가 미흡.

(찬성토론)

의원명	주 요 요 지
이영자	○시민의 복잡한 출·퇴근길을 다소 해소하기 위하여 북북선을 빨리 착공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있고, 북북선으로 인한 시민의 수요를 민자역사를 지음으로 해서 시민의 생활이 윤택해지므로, 교통 영향평가와 임대, 직영등에 대하여는 많은 설명이 있어, 충분한 납득되었음.
이말선	○전문가의 심사와 시민의 소리를 참작하면, 민자역사는 추진되어야 됨.
이사명	○중동신도시 개발 지역에 상권이 형성되어 발전되면, 부천역도 상권을 형성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함.

5. 심사결과 : 부결(찬성 3명, 반대 6명)

6. 소수의견의 요지

경인선 북북선 전철 확장사업이 민자역사와 관계없이 철거됨에 따라, 더불어 철도청의 민자역사 계획이 맞물림에 있어, 민자역사를 지음으로 해서 시민의 생활이 윤택하여짐은 물론, 부천역사를 확장함으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후에 민자역사를 건립한다면, 신설된 순수역사를 허물어야 함에 따라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음.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1. 7. 22.

지역개발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1년 7월 19 일

부천시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1년 7월 19 일 회 부

다. 상 정 일 자 : 제 1 차 위원회(1991년 7월 20 일) 상정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김중연)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시장이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합리성을 높이고 부천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 13,368호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1.5.1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

나. 주요골자

- ① 현행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이 아니라, 건의하는 정도였던 것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은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되었는바, 이 위임 사항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장에게 건의 또는 자문하게 되어 있음.
- ② 도시계획위원회 기능강화 및 지방자치제 실시로 시의회 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 : 도시과장)

질 의	답 변
○도시계획위원회 17명 의원중 시의회 의원은 몇명으로 위촉되니까?	○운영세칙을 만들어야 되지만, 3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과 전문가 비율은?	○현재 13명에서는 당연히 적으로 시장은 위원장, 부시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11명은 공무원 3명, 민간인 2명, 전문가 6명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시의원 4명으로 증원해줄 수는 없는지?	○검토하겠음.

4. 토론요지

해당없음

5.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1의요구 건심사보고서

1991. 7. 22.

일반행정특별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 1991.7.11.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1.7.19. 회부

라. 상정일자 : 제 1 차 일반행정 특별위원회

(1991.7.20) 상정

제 2 차 일반행정 특별위원회

(1991.7.22)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기획실장 김장호)

가. 제안이유

- '91.5.31. 부천시의회에서 의결한 부천시사무의구 및 동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31 조(보고·검사)에 위반된 다하여 '91.6.21. 부천시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건임.

나. 주요골자

- 부천시의회에서 의결한 부천시 사무의구 및 동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폐기물관리법 제 31 조)에 위반됨으로 지방자치법 제 159 조(지방의회의결의 제의와 제소)에 따라 당초 의회에서 가결하였던 동 조례안을 부결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임.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권한 위임과 내부 위임의 차이는?	• 권한 위임은 도지사가 시장에 권한을 주어 위임한 사항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에 위임 가능 • 내부위임은 재위임 불가
• 당초 제안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중 사무위임 사항을 확인하였는지?	• 내용에 없었음
• 가결시 문제점?	• 가결시 도지사의 불응으로 대법원 제소가 불가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김중연)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시장이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합리성을 높이고 부천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 13,368호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1.5.1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

나. 주요골자

- ① 현행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이 아니라, 건의하는 정도였던 것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은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되었는바, 이 위임 사항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장에게 건의 또는 자문하게 되어 있음.
- ② 도시계획위원회 기능강화 및 지방자치제 실시로 시의회 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 : 도시과장)

질 의	답 변
○도시계획위원회 17명 의원중 시의회 의원은 몇명으로 위촉되니까?	○운영세칙을 만들어야 되지만, 3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과 전문가 비율은?	○현재 13명에서는 당연히 적으로 시장은 위원장, 부시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11명은 공무원 3명, 민간인 2명, 전문가 6명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시의원 4명으로 증원해줄 수는 없는지?	○검토하겠음.

4. 토론요지

해당없음

5.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1의요구 건심사보고서

1991. 7. 22.

일반행정특별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 1991.7.11.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1.7.19. 회부

라. 상정일자 : 제 1 차 일반행정 특별위원회

(1991.7.20) 상정

제 2 차 일반행정 특별위원회

(1991.7.22)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기획실장 김장호)

가. 제안이유

- '91.5.31. 부천시의회에서 의결한 부천시사무의구 및 동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31 조(보고·검사)에 위반된 다하여 '91.6.21. 부천시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건임.

나. 주요골자

- 부천시의회에서 의결한 부천시 사무의구 및 동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폐기물관리법 제 31 조)에 위반됨으로 지방자치법 제 159 조(지방의회의결의 제의와 제소)에 따라 당초 의회에서 가결하였던 동 조례안을 부결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임.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권한 위임과 내부 위임의 차이는?	• 권한 위임은 도지사가 시장에 권한을 주어 위임한 사항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에 위임 가능 • 내부위임은 재위임 불가
• 당초 제안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중 사무위임 사항을 확인하였는지?	• 내용에 없었음
• 가결시 문제점?	• 가결시 도지사의 불응으로 대법원 제소가 불가